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91호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8 7 9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GS25 장수주공점]	2
○ 공	고 제 1 8 8 1 호 남동구 강제전인 장기미반환차량 구매공고(2017-2차)	3
○ 공	고 제 1 8 8 2 호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14
○ 공	고 제 1 8 8 6 호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	16
○ 공	고 제 1 8 9 1 호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전재울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18
○ 공	고 제 1 8 9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 공	고 제 1 8 9 8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푸른마트, 천지종합건축, 세븐일레븐 인천간석역]	90
○ 공	고 제 1 9 0 5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91
○ 공	고 제 1 9 0 8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94
○ 공	고 제 1 9 1 0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96
○ 보 건 소 공 고 제	7 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05
○ 보 건 소 공 고 제	7 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106

고 시

○ 고	시 제 1 2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낙시통제구역 지정·변경 고시	108
○ 고	시 제 1 3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115
○ 고	시 제 1 3 1 호 도로명주소 고시	117
○ 고	시 제 1 3 2 호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공시송달 공고	120

회 람								
--------	--	--	--	--	--	--	--	--

발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87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 소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11월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폐업장소

소매인 구분	영업장 소재지	상 호	지정번호 (지정일자)	폐업일
일반소매인 (제7조의3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25, 101호(장수동, 주공아파트상가)	GS25 장수주공점	남동구 2015-00022 (2017. 11. 21.)	2017.11.2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3항-2017.3.7. 일부개정)

- 공고기간: 2017.11.21. ~ 2017.11.29.
- 신청기간: 2017.11.21. ~ 2017.11.29. 18:00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 지정방법: 공개추첨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 유선통보)
- 제출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등록기준지 기재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적법 건축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써 위법사항이 없어야 함

- 접 수 처: 남동구청 7층 생활경제과(문의전화 032-453-6123)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제1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단, 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3항을 준용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881호

남동구 강제전인 장기미반환 차량 공매공고(2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1. 공매공고일정**

-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2017년 11월 22일 ~ 12월 6일 24:00까지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2017년 12월 6일 24:00 까지
-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2017년 12월 8일 14:00 이후
오토마트 인터넷공매홈페이지(www.automart.co.kr) [결과조회]에서 발표
- 라. 배분요구 종기일: 2017. 12. 6.(수)

2. 매각대상 차량: 차량 6대**3. 공매입찰 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4.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www.automart.co.kr) 입찰 등록시 개인 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 나. 선택한 차량에 대하여 입찰금액 10/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하셔야 입찰에 참여되며,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유찰된 입찰보증금은 계좌이체로 이자 없이 3일 이내 환불 처리함)

 **입금계좌번호: 신한 100-023-716710 예금주: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다.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
-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함

마. LPG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취득이 가능하므로 입찰시 반드시 취득 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하며(만약 공동명의로 등록시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우(국가유공자) 1인에 1대만 등록 가능한 기존 장애우(국가유공자) LPG차량은 처분해야만 등록 가능. 다만, 장애우(국가유공자) 소유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함), 자동차 인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매각예정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이번 회차 공매 최저가격임

(* 지난 회차 유찰 차량으로 당초 매각가격의 10% 감액된 금액)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입찰권한이 있는(입금완료) 자로서 1인 입찰(단독입찰)시에도 낙찰됨

7. 매수대금납부기한: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등으로 충당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동일하며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대금(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로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10.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열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전에 차량보관소를 방문하고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인차량보관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2-47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
(☎ 032-453-2903~4)

마. 낙찰되고 계약체결후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고 인수해간 차량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 매각차량중 번호판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대상차량내역(2017-2차)

연번	채납자인적사항		차량번호	차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	공매입고일	채권관계기관	비고
	채납자	채납건수								
1	정**	1	86머4751	포터초장축 슈퍼캡	현대	2002	990,000	2015.11.03	남동구 교통행정과	2차
2	민**	2	32무4740	무쏘	쌍용	2001	810,000	2015.09.0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제교통과	2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제교통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세무1과	
									경기도 부천시 환경사업단 환경정책과	
									부천원미경찰서	
									구로구 자동차관리과	
									구로구 주차관리과	
									구로구 징수과	
									구로구 환경과	
									강서구 주차관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징수부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3	김**	2	인천31더499 6	그랜저XG	현대	1999	450,000	2015.08.18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2차
									동안구 건축교통과	
									김원유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운수과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인천남동경찰서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경비과	
									인천세무서 재산세과	
4	오**	2	64누5272	로체	기아	2006	990,000	2016.03.14	인천시청 세정과	2차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원과	
									인천중부경찰서	
									경기도 시흥시 세정과	
									경기도 시흥시 징수과	
									경기도 시흥시 교통정책과	
									경기도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시흥경찰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시 상록구청 세무과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5	이**	10	25서3336	아반떼	현대	1997	360,000	2017.01.25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남동구청 세무2과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남구청 교통민원과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인천남동경찰서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운수과	
									천안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천안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6	DEBAGA**** RUWANKUMA RA	3	12누6299	매그너스 (LPG)	대우	2002	450,000	2016.08.11	거제경찰서	2차
									경상남도 고성군 민원봉사과	
									경상남도 고성군 경제교통과	
									경상남도 고성군 재무과	
									창원시 진해구 환경미화과	
									창원시 진해구 세무과	
									경상남도 통영시 교통정책과	
									경상남도 통영시 세무과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과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인천남동경찰서	

86머4751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2016.04.18	교통행정과-10024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1-000426)

32무4740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대구 서구청 세무과	2013.02.27	세무과-3836	지방세체납
압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2013.06.14	환경과-15594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32무4740)
압류	서울시 구로구 징수과	2013.09.10	징수과-0910	지방세체납
압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2014.01.07	환경과-44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서울 구로구	2014.01.09	주차관리과-531	주정차위반과태료[2013-08-102630]
압류	서울 강서구	2014.03.26	주차관리과-6669	주정차위반과태료[2013-11-101078]
압류	구로구	2014.04.02	자동차관리과-7622	자동차관리법(감사미필)위반과태료-201402-00068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2014.05.19	징수부-903568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540740연금:0고용:0산재:0)
압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2014.07.03	환경과-18365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32무4740)
압류	부천시 원미구	2014.08.01	원미구세무1과-16154	지방세 체납
압류	경기 부천시 원미구	2014.08.11	경제교통과-4002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3-101703]
압류	경기 부천시 오정구	2014.12.05	경제교통과-8651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7-100098]
압류	구로구	2014.12.08	자동차관리과-28890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409-002865
압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구 환경위생과	2014.12.22	환경-30249(032-625-541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부천원미경찰서	2015.05.29	2015D132601611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2670150071266)
압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구 환경보호과	2015.06.16	환경보호과-4973(15.6.1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동안구 건축교통과☎031-8045-4365	2015.12.09	건축교통과-36562	주정차위반 과태료(2015-25643 32무4740)
압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구 환경보호과	2015.12.16	환경보호과-1824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6.02.18	교통행정과-4301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1-000920)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6.02.18	교통행정과-4301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1-001162)
압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구 환경보호과	2016.06.10	환경보호과-1107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경기도 부천시 환경사업단 환경정책과	2016.12.12	환경정책과-2120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경기도 부천시 환경사업단 환경정책과	2017.06.12	환경정책과-2137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인천31더4996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인천서구청	2001.02.01	교통91153-415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	인천서구청	2001.02.01	교통91153-415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	인천서구청	2001.02.01	교통91153-415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	인천중구청	2001.05.03	교녹91000-2806	주정차위반과태료채납(대체31년1853)
저당	김원유 *저당을부번호: 2826-2001-006699	2001.09.25	10,000,000	
압류	인천서부경찰서	2003.04.10	교통63310-5853	도로교통법위반(200272306031572)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04.08.27	경비교통과-5819	도로교통법위반(200472302020201)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04.10.23	경비교통과-7428	도로교통법위반(200472302024446)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05.11.02	경비교통과-9048	도로교통법위반
압류	인천중구청(032-760-7568)	2006.07.25	교통행정과-21795	불법주정차과태료채납처분에의한압류(200603100084)
압류	서울특별시종로구	2007.01.08	교통행정과-33627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압류	인천서구청장(032-560-4193)	2007.09.11	세무과-15867	지방세채납압류
압류	인천시청 ☎032-440-5993	2008.09.18	세정과-20638	지방세채납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09.05.17	경비교통과-003781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채납()
압류	인천중구청교통행정과	2010.04.29	교통행정과-18862	주정차위반과태료(2009-09-200215)
압류	인천중구청영종출장소	2010.05.25	영종출장소-7193	지방세채납()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3.12.18	2013D2302010022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30293284)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3.12.26	2013D2302010311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30296388)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3.12.26	2013D2302010344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30295789)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4.02.27	2014D2302001807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30392345)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4.06.23	2014D2302004528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40072131)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4.06.23	2014D2302005270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40053613)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4.08.22	2014D2302006977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40191850)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4.08.26	2014D2302007155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40194575)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4.09.11	2014D2302007899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40221626)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4.10.17	2014D2302009148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40277729)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4.12.11	2014D2302011539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40404928)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5.01.23	2015D2302000689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40502473)
압류	인천중부경찰서	2015.08.18	2015D2302006575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270150161020)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5.10.15	교통행정과-24879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7-001088)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6.01.15	교통행정과-1234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0-002511)
압류	인천세무서	2016.07.21	재산세과-T12307	국세채납
압류	인천 중구청	2017.01.12	교통운수과-3263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채납(20161010007428)
영치	인천남동경찰서	2016.08.10	경사 유성철	번호판 영치
압류	인천 중구청	2017.01.12	교통운수과-3263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채납(20161010007430)

64누5272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2013.12.16	차량-37218	검사지연과태료 체납(20130911013527)
압류	안산시상록구청세무과	2014.02.26	세무과-4686	지방세체납에의한압류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4.08.19	세정과-4134	지방세 체납
압류	안산상록경찰서	2014.09.15	2014D133802282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3870130874568)
압류	시흥경찰서	2014.10.17	2014D133501761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3570140599621)
압류	시흥경찰서	2014.10.17	2014D133501766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3570140596665)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031-310-5168)	2014.11.07	차량등록-11385	책임보험과태료(20140721013203)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031-310-5168)	2014.11.07	차량등록-11385	책임보험과태료(20140721013204)
압류	시흥경찰서	2015.01.19	2015D133500084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3570141015226)
압류	시흥경찰서	2015.01.19	2015D133500089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3570141002092)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6.02.12	세정과-3716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031-310-3501,3502)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6.04.18	교통행정과-10024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1-000627)
압류	경기도 시흥시청주정차단속팀	2016.05.02	주정차단속팀-21676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2-002614)
압류	경기도 시흥시청주정차단속팀	2016.05.02	주정차단속팀-21676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2-002846)
압류	경기도 시흥시청주정차단속팀	2016.05.02	주정차단속팀-21676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2-003015)
압류	경기도 시흥시청주정차단속팀	2016.05.02	주정차단속팀-21676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2-003192)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소(031-310-5168,5102)	2016.06.01	시흥차량등록사업소-14925	책임보험 과태료(20160218002037)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소(031-310-5168,5102)	2016.06.01	시흥차량등록사업소-14925	책임보험 과태료(20160218002038)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6.08.09	징수과-1508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031-310-3501,3502)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6.08.10	교통행정과-21055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5-001506)
압류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2016.09.05	차량등록-25013	자동차검사과태료(20160610003464)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7.02.06	징수과-3004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031-310-3501,3502)
압류	경기도 시흥시	2017.08.03	징수과-1807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031-310-3501,3502)

25서3336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인천중구청(032-760-7568)	2009.02.06	교통행정과-4706	불법주정차과태료(2008-06-101448)
압류	인천광역시청	2009.05.17	교통관리과-6859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2009-02-000666)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2.03.06	교통행정과-4356	주정차위반과태료(2011-12-001175)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2.03.06	교통행정과-4356	주정차위반과태료(2011-12-004217)
압류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3.02.04	주차사업팀-247	주차요금 체납압류(032-460-0533)(2008-11682)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11.11	세무과-8195	지방세 체납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014.03.03	징수부-901279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채납액(건강:6859410연금:0고용:0산재: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4.06.16	자동차관리과-30405	자동차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체납 압류(000473-00)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4.09.16	교통행정과-19570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6-000857)
압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5.01.20	주차사업팀-183	공영주차장요금체납(2014-15616 외 3건)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5.09.21	교통행정과-22684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6-000333)
압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5.10.26	주차사업팀-2805	공영주차장요금체납(2015-8219 외 3건)
압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5.11.10	주차사업팀-2981	공영주차장요금체납(2015-8225 외 3건)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교통민원과	2015.12.08	교통민원과-60744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9-001509)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6.03.17	교통행정과-6920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2-000315)
압류	천안시 동남구청	2016.03.25	건설교통과-10796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511900429)
압류	천안시 동남구청	2016.03.25	건설교통과-10796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511900428)
압류	연수구청교통행정과	2016.05.13	교통행정과-30668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1-006233)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06.13	건설교통과-19732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2800947)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06.13	건설교통과-19732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2800951)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06.13	건설교통과-19732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2800950)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06.13	건설교통과-19732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2800949)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06.13	건설교통과-19732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2800948)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07.04	건설교통과-22689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3800705)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09.07	건설교통과-31669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5800810)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09.07	건설교통과-31669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5800811)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09.07	건설교통과-31669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5800812)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2016.09.28	주차관리팀-3293	(191)
압류	천안시 서북구청	2016.10.05	건설교통과-34804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606800696)
압류	연수구청교통행정과	2016.12.20	교통행정과-91406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8-002715)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7.02.15	교통행정과-3693	주정차위반과태료(2016-11-001646)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7.05.11	2017D230501023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570151883875)
압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2017.05.16	사업운영팀-1662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요금미납(2017-649)
압류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2017.06.19	환경보전과-1506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2017.07.10	교통행정과-16961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1704002453)
압류	남동구청 세무2과	2017.07.17	세무2과-10241	지방세체납

12누6299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압류	경남 고성군청	2014.08.12	종합민원실-20140812	검사지연과태료 ,2014-530
압류	경상남도 고성군	2014.09.12	재무과-140912	지방세 체납
압류	거제경찰서	2014.10.10	2014D201701059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40340647)
압류	거제경찰서	2015.02.06	2015D201700102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40724801)
압류	통영시 교통정책과	2015.02.13	교통정책과-7409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대체:21오6783,2013-1613)
압류	경상남도 통영시	2015.03.05	일괄압류	지방세 체납
압류	거제경찰서	2015.03.06	2015D2017002940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40802329)
압류	거제경찰서	2015.03.06	2015D201700270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40806802)
압류	고성군청	2015.03.16	건설교통과-8359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압류	고성군청	2015.03.16	건설교통과-8359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압류	거제경찰서	2015.06.05	2015D201700897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50086651)
압류	거제경찰서	2015.06.05	2015D201700896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50086801)
압류	경상남도 고성군	2015.06.05	건설교통과-24098	주정차위반 (2015-00017540000 W위반일자:2014-12-23)
압류	경상남도 통영시	2015.12.02	20151202	주정차위반 (2015-03929940000 W위반일자:2015-06-03)
압류	거제경찰서	2015.12.29	2015D201701902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50613952)
압류	고성군 건설교통과	2016.01.14	건설교통과-1733	의무보험체납에 대한 압류(20150504001087)
압류	고성군 건설교통과	2016.01.14	건설교통과-1733	의무보험체납에 대한 압류(20150504001088)
압류	통영시청 교통정책과	2016.03.02	교통정책과-8010	책임보험 과태료(20151014007736)
압류	통영시청 교통정책과	2016.03.02	교통정책과-8010	책임보험 과태료(20151014007737)
압류	광주 서구	2016.03.30	교통과-17973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1-100822] (대체:87서6812)
압류	거제경찰서	2016.06.03	2016D201700636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60059008)
압류	거제경찰서	2016.06.03	2016D201700642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60053996)
압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 환경미화과	2016.07.12	환경미화과-2178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대체압류
압류	창원시 진해구	2016.08.02	진해구세무과-10940	지방세 체납
압류	거제경찰서	2016.09.08	2016D201701001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60243131)
압류	거제경찰서	2016.10.26	2016D201701259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60341436)
압류	거제경찰서	2016.12.02	2016D201701410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770160427109)
영치	인천남동경찰서	2016.09.08	경사 유성철	남동구
압류	창원시 진해구 환경미화과	2017.01.03	환경미화과-15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대체압류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7.02.15	교통행정과-3693	주정차위반과태료(2016-11-000479)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882호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도로 중로 1-10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11월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 도로 중로 1-10호선 사업
3. 공고 기간: 2017. 11. 21. ~ 2017. 12. 15.
4.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공고기간 내
 - 나. 보상시기 및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비를 계약체결 후 지급
 - 다. 협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2)
 -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통장사본,
5. 공시송달 내역

순번	동명	지번	토지현황		소유자		사유	비고 (등기번호)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1	장수동	388-18	전	21	채**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번길 ***-**(십정동)	폐문부재	1899687024404
2	장수동	산147-3	임	21*9355.2/16364	유**	*****-****, MANCHESTER, DR. BURNABY, BC, CANADA	수취인 부재	EE350111665KR

6. 기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886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11월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율 (%)		면적(㎡)	시설율 (%)	
변경	석촌 공원	근린 공원	간석동 산15-1 일원	53,577	7,728	14.42	53,691	7,523	14.00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석촌 공원	•시설율 및 녹지율 변경 - 기 정: 14.42% - 변 경: 14.00%	•기존 배드민턴장을 산림으로 복원시키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생활체육 장려를 위하여 통합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 석촌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부지(㎡)	구성비(%)	부지(㎡)	구성비(%)	
총 계		53,577	100	53,691	100	공원면적:증)114.0㎡
기반시설		3,391.0	6.33	3,298.0	6.14	
	도 로	1,236.0	2.31	1,263.0	2.35	시설면적:증)27.0㎡
	광 장	2,155.0	4.02	2,035.0	3.79	시설면적:감)120.0㎡
조경시설		-		-		
휴양시설		990.0	1.85	1,031.0	1.92	시설면적:증)41.0㎡ 공 작 물:감)4기
운동시설		1,345.0	2.51	1,192.0	2.22	시설면적:감)153.0㎡ 건축물: 증)807.0㎡
교양시설		-		-		
편익시설		1,652.0	3.08	1,652.0	3.07	
유희시설		290.0	0.54	290.0	0.54	
관리시설		60.0	0.11	60.0	0.11	
기타시설		-		-		
녹지 및 기타		45,849.0	85.58	46,168	86.00	녹지면적:증)319.0㎡

2.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453-6140)

4.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891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전재울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전재울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11월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전재울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율 (%)		면적(㎡)	시설율 (%)	
변경	전재울 공원	근린 공원	구월동 1501 일원	122,963.6	16,619	13.52	122,963.6	17,458	14.20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전재울 공원	•시설율 및 녹지율 변경 - 기 정: 13.52% - 변 경: 14.20%	•기존 실외 배드민턴장을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시설개선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 전재울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부지(㎡)	구성비(%)	부지(㎡)	구성비(%)	
총 계		122,963.6	100	122,963.6	100	
기반시설		9,258.0	7.53	9,463.0	7.69	
	도 로	7,866.0	6.40	8,071.0	6.56	증 205㎡
	광 장	1,392.0	1.13	1,392.0	1.13	
조경시설		3,564.0	2.90	3,564.0	2.90	
휴양시설		404.0	0.33	404.0	0.33	
운동시설		1,414.0	1.15	2,048.0	1.67	증 634㎡
교양시설		1,513.0	1.23	1,513.0	1.23	
편익시설		-		-		
유희시설		-		-		
관리시설		466.0	0.38	466.0	0.38	
기타시설		-		-		
녹지 및 기타		106,344.6	86.48	105,505.6	85.80	감 839㎡

2.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453-6140)

4.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189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29조)

-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
- 다.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전자게시대 관리·위탁, 비용의 징수 근거 신설

- 라. 공공게시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안 제21조)
- 마. 공공게시시설 위탁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3조)
- 바. 현수막 등 정비 수거보상금 참여주체 명시(안 제26조)
- 사.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안 제31조)
- 아.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3)
- 자. 수수료, 사용료 항목 신설 및 인상 등
 -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인상(안 별표 6)
 - 벽면이용간판 인상, 전자게시대 수수료 신설 등
 - 광고물등 안점점검 수수료 인상(안 별표 7)
 - 공공게시시설(시민게시판) 사용료 인상(안 별표 9)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도시경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83, FAX 453-283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 조례(안)

※ 이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한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심의 관련 서류”란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 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구청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표시방법 완화)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에 의한 표시방법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그 구역 범위 또는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지정 고시된 지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법 제3조제4항 및 영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그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시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2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4항 및 제5항,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이어야 하고, 여성이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건물 2층 이상의 유리벽면에 표시되는 벽면이용간판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9조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과 전자게시대(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별지 8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⑧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벽보의 표시방법) 벽보의 지정벽보게시판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게시판에 같은 내용으로 2면을 초과하여 게시할 수 없다.

제25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및 수량
2.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① 사업소장, 동장(이하 이 조에서 “동장 등”이라 한다)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 등”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 등”이라 한다)에서 정비·수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 등이 제1항의 현수막 등의 정비·수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소에 제출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봉사단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 여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소 여건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다.

③ 동장 등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불법옥외유동 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클린사인&클린남동 봉사단」에 가입한 주민 등이 정비·수거한 현수막 등 광고물과 함께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동장 등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때에 동장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정비·수거에 참여한 주민 등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군·구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9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9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시민게시판에 게시되는 벽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4.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32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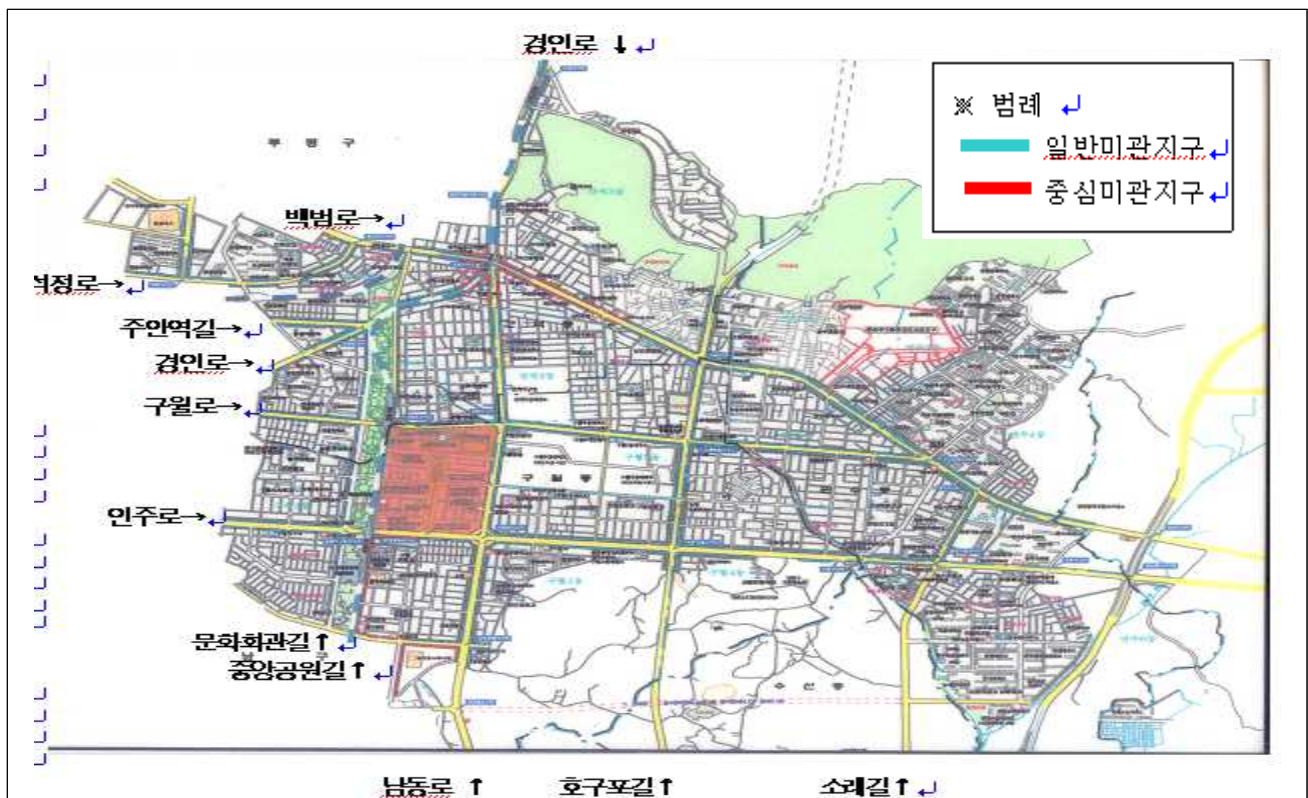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현황 및 표시방법(제7조제1항 관련)**1. 특정구역 지정현황****i) 주요간선도로변 미관지구**

※ 도로양쪽에 접하는 미관지구 내 토지와 건물에 적용함.

도 로 명	기 점	종 점	거 리(km)	비 고
인주로	장수동 산83-4 (치아고개 삼거리)	구월동 1120 (주안4동 경계)	5.88	
구월로	만수동 990 (만수주공 사거리)	구월동 925 (주안6동 경계)	3.41	
백범로	운연동 60-10 (인천시 시경계)	간석동 449-5 (십정2동 경계)	7.10	
경인로	간석동 520-3 (남인천전화국)	간석동 768-5 (부평사거리)	2.55	
남동로	구월동 859-1 (남동경찰서 사거리)	간석동 215-1 (간석오거리)	2.67	
중앙공원길	구월동 1408-2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간석동 395-7 (주원삼거리)	2.32	
문화회관길	구월동 1408-2 (예술회관주차장)	간석동 524 (수림공원 앞 사거리)	2.15	
호구포길	구월동 551-7 (초도노인요양원 입구)	간석동 86-12 (만월터널 입구)	1.95	
소래길	만수동 321-7 (남동구청 정문입구)	만수동 386-2 (만수사거리)	0.90	
석정로	간석동 613-6 (벽돌막 사거리)	간석동 616-98 (현광아파트 앞 사거리)	1.26	
주안역길	간석동 524 (수림공원 앞 사거리)	간석동 395-27 (주안6동 경계)	0.50	
11개소	총 계		30.69km	



ii) 신개발지구

※ 지구내 도로양쪽에 접하는 업무용 토지 및 건물에 적용함.

연번	지 구 명	위 치	총면적(㎡)	비 고
1	논현2택지개발지구	논현 · 고잔동 일원	2,545,174	지구단위사업계획 참고
2	소래 · 논현도시개발구역	고잔동 591번지 일원	2,383,283	“
3	서창2택지개발지구	서창동, 운연동 일원	2,099,858	“
4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	장수동 560번지 일원	185,400	“
5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203,170	“
7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서창동 380번지 일원	428,267	“
8	도림구획정비사업지구	도림동 249번지 일원	155,990	“
9	구월주공재건축지구	구월동 23번지 일원	355,347	“
10	간석주공재건축지구	간석동 939-1번지 일원	129,089	“

iii) 시청 앞 중심미관지구

※ 해당지번 토지와 건물에 적용함

지역명	위 치	비 고
구월동 시청 앞 중심 미관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아래 번지전체 (번지 내 각 호 포함)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2, 1133, 1134, 1135, 1136,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iv) 로데오거리

※ 해당지번 토지와 건물에 적용함.

지역명	위 치	비 고
구월동 로데오 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아래 번지 전체 (번지 내 각 호 포함)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6, 1467, 1468, 1471 1472, 1473, 1474, 1475	

2. 특정구역 내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광고물의 표시제한 사항

가. 일반적 표시기준

①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1개를 각각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업소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직접 접하여 전시 또는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도로를 향한 업소 상단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싸인볼
3. 옥상간판, 상단간판, 측, 후면간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 또는 시트지 등 유리창에서 돌출되지 아니하게 부착하는 창문이용광고물과 연립형지주이용광고물,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상단이나 주출입구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등은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③ 광고물 등의 바탕색을 흑색 또는 적색으로 표시할 경우, 그 표시 비율이 전체바탕색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광고물 등의 색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 등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⑤ 모든 광고물은 부착할 벽면 또는 지주 등에 고정시켜 표시하여야 하며, 자연력에 의하거나 인위적인 방법과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과 애드벌룬 등을 특정구역 내에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업소광고물 중 1개 이상의 간판에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 제한

- ① 벽면이용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업소의 2면 이상에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에는 도로변을 향한 업소의 상단 벽면에 각각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정면 1층에는 벽면이용 간판을 판류, 복합형(판류+입체형), 입체형(글자형을 직접 벽면이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2층 이상에는 복합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3층 이하에는 벽면의 경관, 안전 등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류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1개 업소의 상단 벽면에는 1개 업소의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업소와 관련이 없는 2개 업소 이상의 간판 또는 광고내용을 연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 ④ 벽면이용 간판의 가로길이는 15미터 이내로 해당 업소의 상단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길이는 판류형의 경우에는 1미터 이내로 하고, 입체형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문자의 세로크기 이내로 한다.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판류형 간판 내에 표시하는 문자와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문자의 세로크기는 건물층수에 따라 1층은 5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다만 건물의 상단에 표시하는 입체형간판의 세로 크기는 벽면폭 이내로 한다.

(2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50\text{cm} + (\text{해당층수}-1) \times 5\text{cm}$ 이내

⑥ 광고표시내용에는 상표 등의 도형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형태는 자유로이 하되 미풍양속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다. 돌출 간판의 표시 제한

① **벽면이용**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가 우선하여 설치하며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돌출간판의 표시는 도로에 접한 건물의 정면 양쪽 모서리에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돌출간판 게시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접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 모서리에 직각 등의 형태로 인접하여 2줄 이상의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물 모서리 중 1개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최상단은 지면으로부터 30미터 미만으로 하되 벽면 모서리의 최상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돌출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은 업소 당 2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을 5평방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한

①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으로 업소 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업소는 단독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미관지구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중심미관지구는 2미터(11층 이상 건물은 3미터), 일반미관지구는 2미터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가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최상단 높이는 5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주이용간판 1면의 총 표시면적은 연립형의 경우는 6평방미터 이내로, 단독형의 경우는 3평방미터 이내로 판류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전탑과 유사한 기둥형태(사각기둥,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입체형 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다.

④ 지주이용간판의 광고내용 표시면은 건물벽면과 일직선 또는 평행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돌출부분은 건축선으로부터 일반지역은 50센티미터 이상, 미관지구는 2미터 이상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① 종이, 시트지 등 창문면에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착식 광고물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의 세로 크기는 1층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표시한다.

$$(2\text{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30\text{cm} + (\text{해당층수}-1) \times 5\text{cm} \text{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문자 등의 광고내용은 가로쓰기 형태로 1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전기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

① 전기이용광고물 중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점멸 또는 화면을 변화시킬 경우 문자 또는 도형이 점멸·변화 후 5초 이내에 다른 문자 또는 도형을 점멸·변화시킬 수 없다.

② 전기이용광고물 중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영상으로 나타내는 표시면적 5평방미터 이상인 광고물로 건물의 옥상, 상단,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이하 “영상전광판”이라 한다)에는 이웃한 영상전광판과 수평거리를 35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영상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계획 및 영상전광판의 표출내용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하는 영상전광판의 설치계획이 도시경관 또는 공익상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사. 그 밖의 표시제한 배제 광고물 등

① 이 표시방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구청장이 시행하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지구내의 광고물 표시계획에 의한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병·의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에서 표시하는 광고물 등과 그 밖의 이 표시방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설치 및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2) 광고물 등의 표시완화 사항**가.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완화**

① **벽면이용** 간판은 입체형 또는 복합형으로 5층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상단 중 3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간판시범거리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계획에 의한 광고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광고물 등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규, 계획, 심의결과 등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주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건물명 또는 가로간판을 표시하지 아니한 업소명을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1면의 지름이 60센티미터 이하, 두께 20센티미터 이하의 업소를 상징하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 형태로써 구에서 권장하는 표시방법 및 디자인에 적합한 소형 돌출간판은 2층 이하의 해당 업소 상단 벽면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 및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구청장이 시행하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지구 내의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 또는 광고물 표시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 영상전광판
2. 건물별 광고물 표시 계획
3.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가 매우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광고물
4. 구청장이 도시미관유지를 위하여 광고물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5. 그 밖의 법령과 조례에서 광고물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광고물

② 제1항의 심의대상 광고물 중 같은 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모양, 크기, 표시위치, 재질, 구조 등이 유사하고 같은 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종전의 심의사태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광고물심의를 함에 있어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의 제한범위와 완화범위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없다.

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제

①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별 광고물 표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의 심의 신청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구역 기준에 따르면 광고물의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2.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 표시계획으로 특정구역 표시기준보다 건물과 광고물의 경관을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할 경우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위 제1항의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신청에 대하여 광고물의 심미성, 안전성, 건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여 별도의 표시방법을 의결한 경우 이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

- ① 지역 내 많은 외국인들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 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한다.
- ② 신축건물의 분양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분양(임대)계약서 내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입점자에게 배부하여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광고물 심의개최 및 법령 등의 적용

- ① 이 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구단위 사업계획구역의 광고물 표시기준은 이 표시방법에 따른다.
- ③ 특정구역 내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홀수 월에 실시하며, 다른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5) 기존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종전의 남동구 고시 제2007-23호, 남동구 고시 제2008-8호, 남동구 고시 제2008-36호, 남동구 고시 제2009-4호로 지정 고시되었거나 이 조례 시행 이후 남동구 관내에서 지정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표시방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만료되고, 이 조례에서 정한 표시방법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은 표시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해당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종전의 남동구 고시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 후 표시기간이 연장된 광고물 등은 연장기간 만료 후에는 이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8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별표 3]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26조제1항 관련)

I.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일반형	1면	1,000원	
	족자, 깃발형 현수막	1면	500원	
벽 보·전 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A4용지 초과	100매	3,000원	
	A4용지 이하	100매	2,000원	

II.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남동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남동구에 주소가 있는 만20세 이상 주민 및 등록단체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철탄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구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아파트단지 및 현관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지 전단지 •타 구지역 배포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가. 신청기간: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각동 주민센터

다. 지 참 물: 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자료(현수막의 경우에 한함), 수거광고물

5. 보상금지급: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7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 고
가. 벽면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0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45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65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0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75만원 85만원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18.0㎡ 초과 20.0㎡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5㎡ 초과 4.0㎡ 이하 - 4.0㎡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0㎡ 미만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5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50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70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1.0㎡ 이하 210만원 - 21.0㎡ 초과 30.0㎡ 이하 230만원 - 30.0㎡ 초과 35.0㎡ 이하 245만원 - 35.0㎡ 초과 40.0㎡ 이하 260만원 - 40.0㎡ 초과 45.0㎡ 이하 280만원 - 45.0㎡ 초과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0㎡ 초과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 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 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0㎡ 초과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0㎡ 초과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9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 례 제·개 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u>구청장</u> 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6]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6,000원 1,500원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파. 벽보(50매)	5,000원	
하. 전단(500매)	5,000원	
거. 입간판	4,000원	
너. 전자게시대(광고 1건당)	6,000원	
다.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7]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제1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 (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 5배를 적용한다.

[별표 8]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9]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32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현수막지정게시대(1건당)	10일 / 8,000원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개 소당)	1개월 / 150,000원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개 소당)	1개월 / 100,000원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1개소/1면당)	15일 / 2,000원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 상단(1개 소당)	1개월/30,000원	부가세 별도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 2.0㎡ 이상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7㎡ 초과 4.4㎡ 이하 - 4.4㎡ 초과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15만원을 더한 금 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 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3.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⑮ 변 경 사 항	⑯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도 로 명	⑦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도로명주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현 수 막: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남동구
--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도 로 명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			사무실 면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 복사용지 75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수 탁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3항 [별지 제10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량	⑤ 보관 연월일	⑥ 보관 장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당 (취급)자	⑨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 량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

연번	접수일시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광고물의 종 류	수량 및 면적(㎡)	지급액 (원)	지 급 내 역			지급일	비고
								예금주	은 행	지급계좌번호		

※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4항[별지 제13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전화번호			
	③ 생년월일					
	④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내역	광고물 종류별		지원비	⑤수량 및 면적 (㎡)	⑥신청금액 (원)	비 고 (지원내역)
	현수막	대형(5㎡이상)	1,000원			1면 기준
		소형(5㎡미만)	500원			1면 기준
		족자, 깃발형 현수막	300원			1면 기준
	벽보,전단	20*55cm이하	3,000원			500매 기준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20cm이하	2,000원			500매 기준
주 요 수 거 장 소						
신청계좌	⑦ 예금주	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	광고물 종류별		⑨수량 및 면적(㎡)	⑩지급예정액 (원)	⑪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현수막	대형(5㎡이상)				
		소형(5㎡미만)				
		족자, 깃발형 현수막				
	벽보,전단	20*55cm이하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20cm이하					

※ 지급결정내역(⑨-⑩)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4항[별지 제14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철거) 목록

[illegible]

※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은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 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7항[별지 제18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도로명 주소	
교육계획	일 시	
	장 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별지 제20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 [별지 제21호서식]

『클린사인 & 클린남동』 주민참여 봉사단 단속활동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 ***** (뒷자리는 앞1자만 작성)
주소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클린사인 & 클린남동」 주민참여 봉사단 가입을 신청합니다.

이
우
이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참여 『클린사인 & 클린남동』 봉사단 신분증

앞 면

뒷 면

『클린사인 & 클린남동』
봉 사 단 원 증

사진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NO. 0000 -00

이 사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불법 광고물 정비 주민참여 봉사
단원 임을 확인 합니다.

직위/직급: 봉사단원

성 명: ○ ○ ○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인천 남동구 00동장 인

☎ 453- (o o 동)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89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 소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11월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폐업장소

소매인 구분	영업장 소재지	상 호	지정번호 (지정일자)	폐업일
일반소매인 (제7조의3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23번길 15, 1층(구월동)	푸른마트	남동구 2015-00057 (2015. 4. 27.)	2017.11.22.
일반소매인 (제7조의3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22번길 49-22, 1층(구월동)	천지종합건축	남동구 2016-00100 (2016. 6. 7.)	2017.11.22.
일반소매인 (제7조의3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석산로 3, 103호(간석동, 의성프라자)	세븐일레븐 인천간석역	남동구 2015-00022 (2011. 10. 21.)	2017.11.2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3항-2017.3.7. 일부개정)

- **공고기간:** 2017.11.22. ~ 2017.11.30.
- **신청기간:** 2017.11.22. ~ 2017.11.30. 18:00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 **지정방법:** 공개추첨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 유선통보)
- **제출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등록기준지 기재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적법 건축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써 위법사항이 없어야 함

- **접 수 처:** 남동구청 7층 생활경제과(문의전화 032-453-6123)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제1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같은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단, 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3항을 준용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90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11월24일**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7.11.24. ~ 2017.12. 9.
3. 공고대상: **조4106 외 17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 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7-611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7년 11월 17일 - 방치장소: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범마을휴먼시아 단지내 제3지하주차장 ○ 보관장소: 기전폐차사업소(032-814-4400)
	2017-619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7년 11월 10일 - 방치장소: 간석동 769-29 장수노인정 골목 ○ 보관장소: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7-621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7년 11월 3일 - 방치장소: 남동서로236번길 40 바로앞 도로변 ○ 보관장소: 기전폐차사업소(032-814-4400)
	2017-623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7년 10월 31일 - 방치장소: 남동구 남촌동 523-4 ○ 보관장소: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7-639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7년 11월 15일 - 방치장소: 문화로115번길 3, GS25 앞 ○ 보관장소: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수취인명 (생년월일)	주 소	발송일자(1,2차)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7-00476	**조4106	SM520	다보(주) 임*상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 *층(대명동)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길 *, ***동 ****호(침산동, ****타운)	17.10.11.	17.10.30.	기타	간석동 774-7 노상	17.8.28.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2	2017-00516	**더9662	SM520택시	이*훈 (상품용)	부산광역시 남구 양지골로***번길 **-, **/*(감만동)	17.10.11.	17.10.30.	기타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농협중앙회 뒤 노상	17.9.25.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17-00557	****고5241	카니발	김*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 ***동 ****호(내발산동, ****단지)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4	2017-00558	****도2825	쏘나타III2.0	최*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안로 *, **/*인향아파트 ***동 ****호 (청천동)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5	2017-00559	**러9648	레간자2.0 LPGMT	김*구 (진성상사:상품용)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 **/*(감만동)/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번길 **-(감만동)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6	2017-00560	**구8594	마티즈(MA TIZ)	(주)케이올텍 곽*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나길 **-(온수동)/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서로*번길 **, ***호(논현동)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7	2017-00561	**도3325	마티즈(MA TIZ)	이*덕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동 ***호(주안동, **아파트)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8	2017-00562	****머1556	엑센트	이*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동 ****호(도림동, ****아파트)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9	2017-00564	**1저2739	세피아오토	김*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지동)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0	2017-00566	**루6326	스포티지그랜드	(주) 두리*린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번길 **, ****센타 *동 ***호(항동*가)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1	2017-00567	****가1896	크레도스	김*웅	인천광역시 서구 연개포로**번길 *, *통*반(석남동)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2	2017-00568	**러5743	라노스1.5	이*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번길 **-, ***호(삼송동)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3	2017-00569	**8ㄹ7536	와이드봉고1톤	김*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인수물남길 **-*	17.9.20.	17.10.30.	기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폐차사업소 내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4	2017-00611	등록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범마을휴먼시아 단지 내 제3지하주차장	17.11.17 .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5	2017-00619	등록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769-29 장수노인정 골목	17.11.10 .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6	2017-00621	등록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서로236번길 40 바로앞 도로변	17.11. 3.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7	2017-00623	등록번호판 없음	제네시스(GENESIS) 1대,이륜차1대	미상	미상	미발송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남촌동 523-4	17.10.31 .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8	2017-00639	등록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미발송	소유주 미상	문화로115번길 GS25 앞 3 ,	17.11.15 .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908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11월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7. 11. 24. ~ 12. 9.
2. 강제처리(폐차) 일시: 2017.12. 9.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남동구 관허 폐차장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주2747 외 3대
5.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7. 문의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담당 ☎ 032-453-2825)

무단방치차량소유자및이해관계인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생년월일	대상자주소	저당등록내역	저당권설정자	주소	방치장소
511	인천** 다6644	라노스1.5	승용 소형	강*훈	74****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번길 **-*, *동 ***호(심정동)	을부번호:2801-2001-020963 설정일자:2001.9.17.	엘지캐피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동 679번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기 전산업(주)폐차사업소 내
510	인천*나 5150	엑셀	승용 소형	이*범	28****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 **아 파트*동***호	을부번호:2301-1989-022011 설정일자:1989.11.9.	현대자동차(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6-7 기 전산업(주)폐차사업소 내
408	인천**더 9173	크레도스	승용 중형	이*미	75****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번길 *-**, *동 ***호(삼산동, **아파트)	을부번호:2824-2001-004960 설정일자:2001.7.7.	LG캐피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동 679번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3-2 (주)인천폐차사업소 내 방치
149	**주2747	스파크	승용 경형	김*정	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동 ***호(간석동, ****)	을부번호:4105-2011-013785 설정일자:2011.8.30.	아주캐피탈(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 동 292번지 3호	구월동 1324-12 소재 만수복 개4공영주차장 내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1910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2017.11.24. ~ 2017.12.24.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17.12.24.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소3702 외 10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2825)

2017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109	**소3702	트라제XG	주*건	논현동 562-1 동부프라자 앞	17.9.4.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2	2017-00368	앞,뒤등록번호판없음(**라9862)	스파크	김*환	남촌동 618번지 앞 도로(승기근린공원 맞은편 선학교 건너기 전	17.7.18.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3	2017-00394	**오1392	NEW 그랜저XG LPI(NEW GRANDEUR XG)	한*우	남동구 장수동 368-6 장수가든	17.8.21.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4	2017-00404	**로6049	트라제XG(TRAJET XG)	(주)신대경	구월말로39번길 16-31 성인빌라에서 언덕쪽으로 올라가면 성일빌라 앞	17.8.22.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5	2017-00499	**마3786	아반떼엑스디	장*용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 502동 지상주차장	17.8.28.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6	2017-00533	등록번호판없음	이룬차	미상	호구포로 203-31 남동하모니센터 자전거거치대 옆	17.9.26.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7	2017-00540	등록번호판없음	이룬차	미상	논현동 553-6 새진매곡원 노상	17.9.22.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8	2017-00541	등록번호판없음	이룬차	미상	구월동 1177-4 노상	17.10.12.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9	2017-00542	등록번호판없음	이룬차	미상	남동구 만수로8번길 18-1 LG맨션 가동 옆	17.9.27.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10	2017-00544	등록번호판없음	이룬차	미상	백범로 417 앞 인도/ 주안로 274번길 1 앞 인도	17.9.29.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1	2017-00589	등록번호판없음(2대)	이룬차	미상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후문 경비실 옆	17.10.17.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소3702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소 3702	트라제 XG	승용 중형	주*건	66*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 포로 ***, *동 ****호(구 월동, ***아파트)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4.06.13	환경보전과-1829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4.09.05	2014D230502147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570140575114)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4.12.19	환경보전과-4214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015.03.04	징수부-901301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1 157330연금:0고용:0산재: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5.06.09	환경보전과-1691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2015.12.17	환경보전과-4026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2015.12.28	자동차관리과-55564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006226-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6.06.14	환경보전과-1565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 중구청교통운수과	2016.11.02	교통운수과-14402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7-000262)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6.12.20	환경보전과-3595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경제국 환경보전과	2017.06.12	환경보전과-1432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7.11.18	세입징수과-12549	지방세 체납
						영치	인천광역시 남세협력담당관	2017.03.09		GPS이용 주소를 검색중입니다..

**라9862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 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앞, 뒤 등록번호판 없음 (**라9862)	스파크	승용 경형	김*환	78****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 운길 ***-**, ***동 **** 호(온의동, **아파트)	압류	서울송파경찰서	2012.04.24	2012D112500986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570110807544)
						압류	서울 강동구	2012.07.30	교통지도과-17525	주정차위반과태료[2011-11-102292] (대체:69허2601)
						압류	서울 중구	2012.09.12	교통지도과-18623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5-106351]
						압류	서울송파경찰서	2012.10.11	2012D112502430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570120229151)
						압류	서울 중구	2012.11.14	교통지도과-104336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7-101167]
						압류	서울시 도봉구 징수과	2013.03.13	징수과-4504	지방세체납
						압류	서울 송파구	2013.06.04	주차관리과-32394	주정차위반과태료[2013-02-102852]
						압류	서울 중구	2013.06.14	주차관리과-10675	주정차위반과태료[2013-02-103773]
						압류	서울 중구	2013.07.12	주차관리과-13974	주정차위반과태료[2013-03-100931]
						압류	서울송파경찰서	2013.09.12	2013D112501715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570130430620)
						저당	김한순 *저당을부번호: 1112-2012-000952	2012.04.12	2,000,000	
						압류	서울 강남구	2013.10.10	주차관리과-41482	주정차위반과태료[2013-06-111073] (대체:18허6336)
						압류	서울 노원구	2013.12.10	교통지도과-23392	주정차위반과태료[2013-08-100444] (대체:69허2044)
						압류	서울 영등포구	2014.03.10	주차문화과-4899	주정차위반과태료[2013-11-100603]
						압류	서울 영등포구	2014.04.10	주차문화과-7331	주정차위반과태료[2013-12-102101]
						압류	서울 영등포구	2014.05.08	주차문화과-9515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1-102192]
						압류	서울 중구	2014.06.12	주차관리과-16426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2-103328]
						압류	경기 부천시 원미구	2014.09.12	경제교통과-6780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4-103858]
						압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2015.01.09	환경정책과-87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62자2671)
						압류	서울 서초구청	2015.02.17	주차관리과-3512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406-111747) 대체:23보7447
						압류	서울 서초구청	2015.02.17	주차관리과-3512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406-113059) 대체:23보7447
						압류	서울 서초구청	2015.02.17	주차관리과-3512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407-102000) 대체:23보7447
						압류	서울 서초구청	2015.02.17	주차관리과-3512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407-104626) 대체:23보7447
						저당	배지연 *저당을부번호: 1113-2013-000819	2013.03.18	1,000,000	
						압류	서울 서초구청	2015.02.17	주차관리과-3512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407-106197) 대체:23보7447
						압류	서울 서초구청	2015.02.17	주차관리과-3512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408-103066) 대체:23보7447
						압류	도봉구	2015.06.05	교통행정과-23745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503-000497
						압류	도봉구 징수과 세외수입팀(2091-2784)	2015.06.08	징수과세외-10727	세외수입(과태료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경기 과천시청	2015.06.18	교통과-26942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503-100022) (대체:02허7320)
						압류	서울 은평구	2015.07.08	교통지도과-19108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2-100110] (대체:35허9698)
						압류	경기 부천시 원미구	2015.08.11	경제교통과-23914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4-102105]
						압류	서울 도봉구	2015.12.02	교통지도과-31049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8-100089] (대체:02허7319)

압류	도봉구	2016.03.03	교통행정과-8330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512-002385
압류	서울도봉경찰서	2016.05.17	2016D113100599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3170160015605)
압류	도봉구	2016.06.13	교통행정과-25500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201603-000313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2016.06.21	자격징수부-904509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체납액(건강:9873510연금:0고용:0산재:0)
압류	서울 도봉구	2016.07.04	교통지도과-18047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3-100065] (대체:03허5151)
압류	경기 부천시	2016.07.11	주차지도과-502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4-101388]
압류	춘천경찰서	2016.07.29	2016D140200811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40270130544382)
압류	경기 부천시	2016.09.12	주차지도과-6208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6-102014]
압류	도봉구 징수과 세외수입팀(2091-2786)	2016.10.28	징수과세외-24954	세외수입(과태료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경기 부천시	2017.01.10	주차지도과-980	주정차위반과태료[2016-10-107158]
압류	춘천시	2017.07.25	징수과-9094(TF)	차량과태료체납
압류	춘천시	2017.09.06	징수과-11090	지방세체납
압류	도봉구 징수과 세외수입팀(2091-3509)	2017.11.07	징수과세외-25247	세외수입(과태료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오1392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오 1392	NEW 그랜저XG LPI(NEW GRANDEUR XG)	승용 대형	한*우	97**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 로 **, ***동 ***호(부평 동, *****)	압류	경기도 광명시	2017.07.11	지도민원과-26710	주정차위반 (2017-070625 W)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08.09	세무1과-12503	지방세 체납
						압류	경기도 광명시	2017.08.09	지도민원과-31031	주정차위반 (2017-088115 W)
						압류	인천삼산경찰서	2017.08.28	2017D231000602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1070170338441)
						압류	인천삼산경찰서	2017.10.26	2017D2310008210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1070170613577)
						압류	인천삼산경찰서	2017.10.26	2017D231000833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1070170513762)
						압류	인천서구청주차관리과	2017.11.07	주차관리과-41383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7-002198)

**로6049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로 6049	트라제XG (TRAJET XG)	승용 중형	(주) 신대경	109--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촌리 ***번지*호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02-7994)	2005.01.29	교통63310-000300	과태료 체납(200471123095777,7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02-7994)	2005.04.13	교통63310-001616	과태료 체납(200471123110804,7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02-7994)	2005.05.20	교통63310-003191	과태료 체납(200571123002766,7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5.07.26	교통63310-004489	과태료 체납(200571123021478,40000)
						압류	수원시장안구청장 031-228-5367	2005.10.11	장안구사회산업과-27993	주정차과태료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5.11.21	교통63310-007713	과태료 체납(200571123049113,7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5.11.22	교통63310-007713	과태료 체납(200571123048430,4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5.11.23	교통63310-007713	과태료 체납(200571123044042,10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5.11.24	교통63310-007713	과태료 체납(200571123041379,10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5.11.24	교통63310-007713	과태료 체납(200571123041379,100000)
						압류	영통구청장 031-228-8895	2005.11.29	영통구사회산업과-29175	주정차위반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6.01.10	교통63310-008968	과태료 체납(200571123060663,7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6.01.11	교통63310-008968	과태료 체납(200571123060235,4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6.01.11	교통63310-008968	과태료 체납(200571123058577,4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6.01.11	교통63310-008968	과태료 체납(200571123057182,70000)
						압류	서울강서경찰서(2692-7185,2696-6728)	2007.07.11	교통63310-000001	과태료 체납(200771123024622,40000)
						압류	화성서부경찰서	2010.03.31	경비교통과-002495	과태료체납(200971350052850)
						압류	평택시	2010.05.26	교통행정과-20018	주정차위반과태료(001325)
						압류	화성서부경찰서 031-379-9219	2010.09.13	경비교통과-007975	과태료체납135070100079077
						압류	평택시교통행정과	2010.11.01	교통행정과-42378	주정차위반과태료(2010-07-000002)
						압류	인천광역시남구032-880-7368	2010.11.04	교통민원과-49724	주정차과태료2010-1-002659,52주7899
						압류	화성서부경찰서031-379-9219	2010.12.28	경비교통과-007155	과태료체납135070100295723
						압류	화성서부경찰서031-379-9219	2010.12.28	경비교통과-007155	과태료체납135070100283201
						압류	화성서부경찰서031-379-9219	2011.01.12	경비교통과-000246	과태료체납135070100352055
						압류	화성서부경찰서031-379-9219	2011.02.09	경비교통과-000862	과태료체납135070100429508
						압류	화성서부경찰서031-379-9219	2011.02.09	경비교통과-000862	과태료체납135070100407464
						압류	화성서부경찰서031-379-9219	2011.02.09	경비교통과-000862	과태료체납135070100376991
						압류	경기도 화성시	2011.04.20	교통행정과-6501	주정차위반 (2011-001238 W)
						압류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	2011.04.20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9481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2011-000437)
						압류	화성서부서031-379-9219,359	2011.05.02	경비교통과-2897	135070100584621
						압류	화성서부서031-379-9219,359	2011.05.02	경비교통과-2897	135070100581469
						압류	화성서부서031-379-9219,359	2011.05.02	경비교통과-2897	135070100580968
						압류	화성서부서031-379-9219,359	2011.05.02	경비교통과-2897	135070100579986
						압류	화성서부서	2011.05.11	경비교통과-3312	135070100592515
						압류	화성서부서031-379-9219,359	2011.05.13	경비교통63310-1100509	135070100566742
						압류	경기도 화성시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2012.07.20	환경정책과-2106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화성서부경찰서	2012.11.02	2012D1350015440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5070100350265)

압류	화성서부경찰서	2012.11.02	2012D135001544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5070100346165)
압류	경기도 화성시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2013.01.03	환경정책과-216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체납압류
압류	경기도 화성시	2013.01.03	징수과-3188	지방세 체납
압류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	2013.04.25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10604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2013-001812-00)
압류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	2013.04.25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10604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2013-001813-00)
압류	경기도 화성시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2013.06.27	환경정책과-2020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3.08.12	교통행정과-3111	주정차위반과태료(2013-05-000023)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3.12.13	교통행정과-12323	주정차위반과태료(2013-09-003392)
압류	경기도 화성시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2014.01.13	환경정책과-147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4.02.10	교통행정과-2720	주정차위반과태료(2013-11-002288)
압류	경기도 화성시	2014.02.10	징수과-3114	지방세 체납
압류	경기도 화성시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2014.08.01	환경정책과-2855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경기도 화성시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2014.12.30	환경정책과-49647	환경개선부담금 2014-2기분 체납압류
압류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2015.06.23	기후환경과-11489	2015-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2015.12.29	기후환경과-29475	환경개선부담금 2015-2기분 자동차체납 일괄압류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6.02.18	교통행정과-4301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1-002452)
압류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2016.06.01	기후환경과-16024	환경개선부담금 20161기분 체납자 일괄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교통민원과	2016.08.08	교통민원과-45372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5-001452)
압류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2017.01.02	기후환경과-25	환경개선부담금 2016-2기분 자동차체납 일괄압류
압류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2017.06.05	기후환경과-18164	2017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경기도 화성시	2017.08.04	징수과-19338	지방세 체납

**마3786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마 3786	아반떼 엑스디	승용 중형	장*용	44**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번지 **	압류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판사이기섭	2003.04.21	2003카단1283	자동차가압류
						압류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2004.10.21	차사-13797/040155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체납
						압류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이경훈	2005.04.20	2005카단7315	자동차가압류
						압류	용인시장	2005.08.24	세정과-25658	지방세체납
						압류	용인경찰서	2005.11.14	경비교통과-11185	과태료체납(200571317107890)
						압류	용인경찰서	2005.11.14	경비교통과-11185	과태료체납(200571317105669)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06.03.20	교통과-9444	주정차위반과태료(200509003346)
						압류	용인경찰서	2006.05.23	경비교통과-5893	과태료체납(200671317013808)
						압류	용인경찰서	2006.05.23	경비교통과-5893	과태료체납(200671317013820)
						압류	경기도 시흥시 TEL)310-3467	2007.03.07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압류	화성경찰서(031-371-8259)	2007.07.09	교통63310-009137	과태료 체납(200771324024490,40000)
						압류	경기도 화성시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133)	2007.08.28	동부세무과-6614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인천광역시중구청교통행정과☎032-760-7565	2007.12.11	교통행정과-39867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200706100568)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2008.05.01	부과징수부-983	보험료체납()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2008.09.10	부과징수부-2559	보험료체납
						압류	화성동부경찰서031-371-8259	2011.02.08	경비교통과-001058	과태료체납132470100434222
						압류	화성동부경찰서031-371-8259	2011.04.08	경비교통과-2405	132470100669561
						압류	화성동부경찰서031-371-8259	2011.05.20	경비교통과-6949	132470100680604
						압류	경기도 광명시	2011.07.27	지도민원과-13276	주정차위반 (2011-015941 W)
						압류	화성동부경찰서(031-371-8359)	2011.10.14	경비교통과-23152	132470110138330
						압류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	2012.08.27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21039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2012-003870-00)
						압류	화성동부경찰서	2013.10.29	2013D132403040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2470130692229)
						압류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4.07.08	경제교통과-14905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2-102294]
						압류	화성동부경찰서	2014.07.14	2014D132401405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2470140237696)
						압류	경기도 화성시동부출장소	2014.08.22	세무과-15030	지방세체납
						영치	경기도 화성시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 세무과	2015.06.03		보관장소:화성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7-7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1월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1.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2017. 12. 06.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2017.11.21. ~ 2017.12.05.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제과점 영 업	2009- 0199165	뚜레쥬르 만수벽산점	한**	호구포로 920, 212호 223호 (만수동, 벽산아파트주상가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3-08-01	2017-12-06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7. 12. 0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7-7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1월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1.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일자: 2017. 11. 23.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2017. 11. 23. ~ 2017. 12. 07.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반음식점	2010-0199806	크루즈	김**, 박** 주)엠앤엠홀딩스	논고개로 123번길 35, 3층(논현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7.07.31	2017.11.23.
일반음식점	2004-0199001	소머리국밥	김**	석촌로 51-1 (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6.12.19	2017.11.23.
일반음식점	2001-0199144	번영식당	신**	백범로467번길 10-22 (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0.06.30	2017.11.23.
일반음식점	2003-0200057	꼬모	최**	석정로 518, 1층 (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6.06.30	2017.11.23.
일반음식점	2014-0199605	또봉이통닭	정**	남촌동로 35번길 9-14, 1층 (남촌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7.02.17	2017.11.23.
일반음식점	1980-0199039	장어이야기	김**	논현동 111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3.08.23	2017.11.23.
일반음식점	2001-0199301	하우스홀드	윤**	논곡로 83-1 (논현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6.09.20	2017.11.23.
일반음식점	2010-0200025	가마솥에빠진한 방죽발	김**	석촌로 42, 1층 (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6.06.30	2017.11.23.
일반음식점	2001-0199082	김밥과만두	김**	경인로 524번길 39, 1층 일부(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6.07.31	2017.11.23.
일반음식점	2005-0199203	행복한밥상	김**	경인로 524번길 39, 1층 일부(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6.07.31	2017.11.23.
일반음식점	2013-0200299	가마솥국집	김**	남촌동로 23-1, 1층 103호,110호 (남촌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6.12.31	2017.11.23.
일반음식점	2002-0199660	도드람숯불갈비	김**	남촌동로 35번길 9-13, 2층 (남촌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6.03.11	2017.11.23.
일반음식점	2008-0200050	LA북창동순두부 인천소래점	송**	소래역로 42, 104~105호 (논현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7.04.24	2017.11.23.
일반음식점	2007-0199570	대추나무농원	윤**	배려터로 8, 1층 (수산동)	사업자등록폐업(말소)	2017.02.07	2017.11.23.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8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12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 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낚시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낚시통제구역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으로 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위치) ① 낚시통제구역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775번지 지선으로 바다 및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바닷가로 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면적) 낚시통제구역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부터 군자대교까지로 가로 2,300미터, 세로 100미터, 면적은 230,000㎡로 별표 1과 같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낚시통제구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정한다.

- ①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 ② 어선의 안전항행을 확보하고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③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연월일) 낚시통제구역은 2018. 1. 1. 지정·변경한다.

제8조(과태료) ①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고시는 2018. 1. 1.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지정)	개정(지정·변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낙시 통제구역의 지정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동일)
제2조(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낙시통제 구역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낙시통제구역』으로 한다.	제2조(낙시통제구역의 명칭)(현행과 동일)
제3조(낙시통제구역의 위치) ① 낙시 통제구역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775번지 지선으로 바다 및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의한 바닷가로 한다.	제3조(낙시통제구역의 위치)(현행과 동일)
제4조(낙시통제구역의 면적) 낙시통제 구역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부터 한화교 까지로 가로 1,500미터, 세로 100미터, 면적은 150,000㎡로 별표 1과 같다.	제4조(낙시통제구역의 면적)----- ----- --- 군자대교 --- -- 2,300미터 , ----- 230,000㎡ ----- -----
제5조(낙시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낙시 통제구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정 한다.	제5조(낙시통제구역의 지정 사유)(현행과 동일)

①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②어선의 안전항행을 확보하고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③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 통제구역의 통제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연월일)
낚시통제구역은 2013.11.28 지정한다.

제8조(과태료) ①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현행과 동일)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연월일)
----- 2018. 1. 1. 지정·변경
-----.

제8조(과태료)(현행과 동일)

[별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위치도(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위치도(당초)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낙시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130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2017. 11. 24.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2017년11월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통·반구역조정현황

승인 일자: 2017.11.24.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72	3,712	6	28	678	3,740	
구월1동	38	195	0	0	38	195	
구월2동	41	211	0	0	41	211	
구월3동	42	220	0	0	42	220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5	163	0	0	25	163	
간석3동	42	217	0	0	42	217	
간석4동	39	207	0	0	39	207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1	156	0	0	31	156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5	211	0	0	35	211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53	250	5	24	58	274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9	241	0	0	39	241	
논현2동	33	211	0	0	33	211	
논현고잔동	32	180	1	4	33	184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13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11월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55번길 5-14 외 3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408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9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5번길	5-1 4	2014. 07.25.	선수촌공원로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5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7. 11.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55번길 5-14 기초구간에위치하여5-14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347 번길	144	2009. 11.16.	함박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80m지점에 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11.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함박외로347번길 144 기초구간에위치하여144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2 외 6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9번 길	8-5	2009. 11.16.	서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7. 11.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판로59번길 8-5 기초구간에위치하여8-5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404	2009. 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7. 11.22.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404 기초구간에위치하여404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9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408	2017.1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9번길	14-4	2017.1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9번길	14-6	2017.1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9번길	14-8	2017.1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3번길	9	2017.1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9번길	8-7	2017.1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9번길	8-5	2017.1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1-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9번길	8-3	2017.11.2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32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11월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명: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7. 11. 22. ~ 2017. 12. 6. (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453-2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주소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구분	통보대상자(별표)	도로명주소	사유
1	문화로89번길 8-32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배다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8-32	폐문부재
2	문화로89번길 8-33	1층 101 102 103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문경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8-33	폐문부재
			임차인	서양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8-33	폐문부재
3	문화서로28번길 7-9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호	임차인	구연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7-9	폐문부재
4	문화서로28번길 7-21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호	임차인	백규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7-21	수취인부재
	문화서로28번길 7-21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호	임차인	이상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7-21	수취인부재
5	문화서로28번길 7-24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윤주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7-24	수취인불명
6	문화서로28번길 13-8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신인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13-8	수취인불명
7	문화서로28번길 19-23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박진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19-23	폐문부재
			임차인	신민휴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19-23	폐문부재
8	문화서로28번길 19-25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오유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19-25	폐문부재
9	문화서로28번길 33-11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신현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33-11	폐문부재
10	문화서로28번길 33-18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방수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33-18	폐문부재
11	문화서로28번길 33-24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허성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33-24	폐문부재
12	문화서로28번길 39-22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소유자	김경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39-22	폐문부재
			임차인	이정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39-22	폐문부재
			임차인	이승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39-22	폐문부재
13	문화서로28번길 39-30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황경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39-30	폐문부재
14	문화서로3번길 22-4	1층 101 102호 / 2층 201 202 203호 / 3층 301호	소유자	이영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2-4	수취인불명
			임차인	이영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2-4	폐문부재
			임차인	권숙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2-4	폐문부재
			임차인	서강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2-4	폐문부재
			임차인	이종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2-4	폐문부재
			임차인	김태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2-4	폐문부재
15	문화서로3번길 22-7	1층 101 102호 / 2층 201 202호 / 3층 301호	소유자	박종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2-7	폐문부재
			임차인	송안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2-7	폐문부재

16	문화서로3번길 28-7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소유자	이승용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38	이사
			임차인	안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8-7	폐문부재
			임차인	현남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8-7	폐문부재
17	문화서로3번길 28-9	1층 101 102호 / 2층 201 202호 / 3층 301호	소유자	윤귀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18번길 3	폐문부재
18	문화서로3번길 28-11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이근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8-11	폐문부재
			임차인	송아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8-11	폐문부재
			임차인	이금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8-11	폐문부재
19	문화서로3번길 28-15	1층 101 102호 / 2층 201호 / 3층 301 302호	임차인	이화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8-15	폐문부재
			임차인	이소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8-15	폐문부재
			임차인	박재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3번길 28-15	이사